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우리 곁 소상공인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 간단소개

①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신제품 개발,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유형별 특화프로그램 참여, 홍보·마케팅, 팀빌딩 등 소상공인이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사업공고 통합] '26년부터 ¹⁾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20~'25년)과 ²⁾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22~'25년) 공고를 통합하여, 소상공인 성장단계별로 다른 공고를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공고를 통합 운영합니다.

②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 ¹⁾로컬기업 육성 사업은 성장지원자금 300만원, 사업화 자금 최대 5천만원을
²⁾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성장지원자금 300만원,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③ 어떻게 신청하나요?

☞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 [지원사업조회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 →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 검색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스템 접수기간은 2026. 4. 1(수)부터 4. 24(금)까지입니다.

④ 궁금한 점이 있어요!

☞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주관기관(p17, 문의처)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해주시고 문의해주세요.

⑤ 로컬기업 육성 사업,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의 사업에 동시에 선정될 경우, 소상공인은 원하는 사업 하나를 최종 선택하여야 합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성장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이 유망 로컬기업 및 강한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

❖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

- ① **[로컬기업 육성 사업]** 지역의 자원·문화(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상태, 생활분야, 지역특산물 등)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를 창출하는 기업
- ②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기업가장인정신, 창의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기업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 **(신청기간)** 2026년 4월 1일(수) 10시 ~ 4월 24일(금) 16시까지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수 (www.sbiz24.kr)

- **(지원규모)** 참여하는 사업에 따라 지원내용(금액) 상이

- 성장지원 1,000개사 선정, 사업화 540개사 선정

구분	(초기) 로컬기업 육성	(성장) 강한소상공인 성장		비고
		로컬	혁신	
지원내용	신제품 개발,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유형별 특화프로그램,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파트너사 협업	-	권장		-
지원 규모	성장지원 (멘토링협업)	500개사 대상 최대 자금 3백만원	500개사 대상 최대 자금 3백만원	
	사업화	290개사 최대 5천만원	150개사 최대 1억원 100개사 최대 1억원	540개사
국비지원 비율	80%	100%		-
권역별 선정비율	수도권 10%, 지역 90%	수도권 10% 지역 90%	제한 없음	-

* 지원규모는 예산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선정 후 프로그램 활동 시 공동대표 교차 참석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기업단위로 제공

** 단, 발표평가(오디션) 시 주대표자 참석 필수 ※ **공동대표 대참 불가**

① 로컬기업 육성 사업

○ **(신청자격)** 사업신청일 기준, ①로컬기업이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②소상공인

- **(정의)** 지역의 자원·문화(역사전통, 지역특산물 등)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를 창출하는 기업

* 자세한 로컬기업 정의는 [참고2]를 확인

②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 **(유형별 정의)** 강한소상공인은 로컬유형과 혁신 유형으로 지원

① **(로컬 유형)** 지역 고유의 자원·문화를 활용한 아이디어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유형

② **(혁신 유형)**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취향, 가치 등) 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로 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시키는 유형

○ **(신청자격)** 단독 또는 파트너사* 협업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한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가진 소상공인

* 파트너사 : 소상공인과 협업·융합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스케일업 조력자

** 파트너사는 권역 무관 최대 5건까지만 협업 허용

- 단독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선정 이후에 주관기관을 통해 파트너사와의 매칭 지원 가능

< 파트너사 자격요건 >

신청유형	내용
① 창작자	- 제품(서비스)에 디자인, 패키징 등의 고도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에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작자(개인 또는 기업)
② 스타트업	- 스타트업은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창업기업을 의미하나, 업력 제한은 없으며, 혁신적인 기술 등 협업·융합이 가능한 창업기업 ※ 단, 협약 이후 창업한 업체는 파트너사 선정 및 사업화자금 사용 불가
③ 이업종 소상공인	- 이(異)업종간 협업·융합을 통해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신청제외 대상

구분	세부요건												
로컬기업 육성 사업	'20~'25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경우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22~'25년 강한 소상공인 기 선정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한 ① '22년 선정기업 전체 ② '23년 라이프스타일·로컬브랜드 유형 선정기업 ③ '24~'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트랙 I 기 선정 사업장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기존 운영 트랙</th> <th>기존</th> <th>현행(26년)</th> </tr> </thead> <tbody> <tr> <td>트랙 I</td> <td>라이프스타일, 로컬, 장수 소상공인</td> <td>통합 운영</td> </tr> <tr> <td>트랙 II</td> <td>온라인셀러</td> <td>별도 운영</td> </tr> <tr> <td>트랙 III</td> <td>글로벌</td> <td>별도 운영</td> </tr> </tbody> </table>	기존 운영 트랙	기존	현행(26년)	트랙 I	라이프스타일, 로컬, 장수 소상공인	통합 운영	트랙 II	온라인셀러	별도 운영	트랙 III	글로벌	별도 운영
기존 운영 트랙	기존	현행(26년)											
트랙 I	라이프스타일, 로컬, 장수 소상공인	통합 운영											
트랙 II	온라인셀러	별도 운영											
트랙 III	글로벌	별도 운영											
공통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3] 확인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⑤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평가·선정단계에서 신청제외 대상임이 확인 될 경우 탈락 또는 선정취소 처리 될 수 있음

** 타 부처 사업 간 중복 수혜 제한 없음 (소상공인 개별 타부처 측 중복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 **(신청기간)** 2026년 4월 1일(수), 10:00 ~ 4월 24일(금), 16:00 까지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신청방법)**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수(www.sbiz24.kr)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

□ **(신청권역)**

○ **(로컬기업 육성)** 활용하는 지역자원·문화의 소재권역을 선택하여 신청

* 활용자원의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본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선정 후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 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하여야 함

**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제재처분이 취해질 수 있음

○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권역 선택 필수

* 사업 선정 이후 사업장 주소지 이전 등 권역 이동 시, 기 선정 권역을 기준으로 활동(교육, 오디션) 진행

□ **(제출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필수	1 사업신청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파트너사 동반 참여 시] 파트너사 신청서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한정
	4 사업계획서 (서식)	작성 후 첨부
	5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 공고일 기준 서류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마이데이터를 동의했다라도 소상공인확인서 등 데이터 확인 불가
	6 사업자등록증	
	7 국세 납세증명서(개인)	

	8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 마이데이터 미동의 혹은 미연동 시 직접 서류 발급 및 첨부 필요
	9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 '23년, '24년, '25년	
해당시 제출	10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11	[파트너사 동반 참여 시] 기업소개 자료(포트폴리오 등)	
	12	[공동대표]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대표 명시], 공동대표 확인서 (서식)	
	13	[가점] 우대지원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참고5)	

❖ **유의사항**

-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소상공인24(sbiz24.or.kr)를 통해 작성·첨부
- 2)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 인정**
- 3) 항목 당 최대 30MB까지 허용되므로 용량 초과 시 사진 등 압축하여 업로드 필요
- 4) 항목 당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zip파일(알집 등)로 업로드 필요
- 5)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일부 서류(소상공인확인서 등)는 자동 연동하여 제출되나, 서류발급 이력이 없으면 마이데이터를 동의했더라도 데이터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단은 추가 증빙자료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 6) 법인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국세·지방세납세 증명서(개인)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 안내 예정

(중복참여 불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또는 타부처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이하 해당 사업은 동시에 수행 불가 (참고6)

1 로컬기업 육성

- **(성장지원 자금)** 초기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기업경영을 위한 외부자문가 활용 자문비용 등을 위한 성장지원 자금 3백만원 지원
- **(멘토링)** 경영 애로사항, 사업고도화 방향 수립 등 수요조사와 전문 툴(tool)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기업 역량진단 제공
- **(교육·컨설팅)** IR 피칭 교육,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사업 수혜자간 네트워킹 등 사업 고도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 **(사업화 자금)** 권역별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290개사 대상, 신제품 개발 및 브랜드(CI, BI) 고도화, 로컬 커뮤니티 형성, 사업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 지원규모는 예산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80% 이하) + 신청기업 자부담금(20% 이상)

< 소상공인 자부담금(대응자금) 예시 >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부담금(대응자금)*
비율	100%	총 사업비의 80% 이하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개인	5,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4,000만원	3,200만원	8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 자부담금(대응자금) : 신청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가능

** 사업비 중 자부담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사업비 집행항목

집행항목	집행내역
개발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	• 브랜드(CI, 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	• 마케팅·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디자인 등 관련 용역비
기타	• 축제 등 로컬 커뮤니티 형성, 행사 운영 등 용역비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광고선전비	• 온·오프라인 광고 선전, 언론게시 등을 위한 비용
전문가활용비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지급수수료
임차비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재료구입비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사업활동비	• 역량개발, 사업화 등을 위한 세미나·학회·교육 등 참가비

* 세부적인 집행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

- 자부담금(대응자금) 인정항목

집행항목	집행내역
인건비	•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인건비
	• 직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수수료및사용료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임차비	• 사업장 역할·기능을 하는 임차비(월세 등)

* 세부적인 자부담금(대응자금) 인정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 모든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1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 외주 용역거래 불가
 - * 협동조합원 간 자기거래 및 이해관계자 간 거래 금지 등
-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하며, 목적 외로 사용 불가
 - * 세부 지원항목, 집행제한 요건 등은 별도 안내 예정

②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 **(성장지원자금)** 창업아이템 사업화 및 기업경영을 위한 시제품 제작, 컨설팅 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한 자금 3백만원 지원
- **(팀빌딩)** 외부 파트너사* 발굴·매칭으로 참여기업과 파트너사 간 협업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지원
- **(BM고도화)**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및 리브랜딩·디자인 등 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
- **(특화프로그램)** 국내·외 판로개척, 플랫폼사 e비즈니스 역량강화, 투·융자 연계를 통한 스케일업,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 제공
- **(사업화 자금)** 권역별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250개사 대상으로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정부지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차등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100% 지원)

구분	내용
참여인원	1개사 + 파트너사 (창업자, 스타트업, 이업종 소상공인 中 택1)
아이디어 선정	500개사, 성장지원자금 3백만원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소상공인 선정	250개사,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 지원규모는 예산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 지원비 집행항목

항목	상세내역
개발비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브랜드비	• 브랜드(CI, BI), 디자인 등 용역비
홍보비	• 마케팅·홍보 용역비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등
전문가활용비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
임차비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재료구입비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매장 모델링	• 사업자 소재지 상의接客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모델링 비용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 모든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1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 외주 용역거래 불가
 - * 협동조합원 간 자기거래 및 이해관계자 간 거래 금지 등
-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하며, 목적 외로 사용 불가
 - * 세부 지원항목, 집행제한 요건 등은 사업비 지급 시 별도 안내 예정

5

선정절차

□ (평가방법) 요건검토 → 서류 → 오디션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구분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성장지원	④ 권역별 오디션
세부 내용	소상공인 여부 등 검토	성장지원 대상자 선정 (로컬) 500개사 (강한) 500개사	성장지원 자금 3백만원 팀빌딩,멘토링 등 진행	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선정 (로컬) 290개사 (강한) 250개사
선정 규모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로컬) 최대 5천만원 (강한) 최대 1억원

① (요건검토) ¹⁾서류 제출여부, ²⁾소상공인 여부, ³⁾로컬기업 육성 사업, 강한소상공인 지원 사업 자격 등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 요건검토(소상공인, 업종, 사업자등록상태, 국세·지방세 체납 등)는 신청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시까지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서류평가)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성장지원 대상자 1,000개사 선정 (전체 신청자 中 1,000개사 선정)

-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60%(60점)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로컬기업 육성 사업 서류평가 항목(안) >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지역성(50)	• 지역 이해도 및 자원 활용도	25점
	• 지역 가치 창출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25점
성장 가능성(50)	• 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필요성)	15점
	•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등 아이템 실현가능성	20점
	• 자금 조달·활용 계획 및 시장진입, 성과창출 전략	10점
	• 대표자 및 팀원의 전문 역량	5점
합계 (가점 별도)		100점

<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서류평가 항목(안) >

구분		평가내용	배점	
사업 적합도	공통	• 사업참여 목적 및 필요성의 명확성	5	10
		• 참여기업 및 참여인원의 적합성	5	
사업성	혁신	• (사업내용)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및 경쟁력	15	40
		• (사업성) 아이템의 창의성·독창성 및 사업 성공전략	15	
		• (주요성과) 기업의 성과 및 성장 이력	10	
	로컬	• (사업내용)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및 경쟁력	15	40
		• (사업성) 지역자원 기반 사업 성공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전략	15	
		• (주요성과) 기업의 성과 및 성장 이력	10	
성장성	공통	• 향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구체성·적정성	20	50
		• 사업참여를 통한 기대효과 및 성과 창출 가능성	15	
		• 파트너사 협업을 통한 고도화 방안의 적정성	15	
합계 (가점 별도)			100점	

③ (성장지원) 1,000개사 대상 성장지원 자금 3백만원 및 비즈니스모델 (BM) 고도화 상담 진행

* 성장지원 진행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시활용 온라인교육 수강 예정

-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한정) 사업 고도화 및 오디션을 위한 팀빌딩, 기업 진단, 피칭 교육 등 진행

④ (오디션) 로컬창업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확장성, 사회·지역적 가치 등을 심층평가

* 오디션(피칭방식, 지표 등)에 대한 내용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오디션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❶ 권역별 오디션 (서류평가로 선발된 1,000개사 중 540개사 선정)

- (로컬기업 육성) 290개사를 선정하고,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배정

-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250개사를 선정하고 1차 사업화자금 최대 6천만원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배정

② 전국 오디션 (권역별 오디션으로 선정된 540개사 中 80개사 선정)

- (로컬기업 육성) 상위 20개사 선정, 추가 사업화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상위 60개사 선정, 추가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

□ (서류평가 가점) 아래 우대 조건 중 최대 점수 1건만 인정(참고5)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역발전특구, 백년가게·백년소공인 등 최대 가점 점수의 1건만 인정 (중복 불가)
 - * 예시: 신사업창업사관학교(2점), 지역발전특구(1점), 소상공인 IP역량강화사업(0.5점)에 대해 우대사항이 있는 경우, 신사업창업사관학교(2점)만 가점 인정
 - **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면 별도 보완절차 없이 불인정 처리

6 후속연계 지원

□ 후속연계 지원

- (정책자금) 신용보증재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4억원 이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혁신성장 촉진자금(2억원 이내)
- (연계사업)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LIPS I),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LIPS II), 글로벌소상공인 등 후속연계 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펀딩 수수료 및 성공 인센티브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최대 4억원 보증 지원
혁신성장촉진자금	운전자금(최대 2억원) 및 시설자금(최대 10억원) 융자 지원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LIPS I)	운전·시설자금(최대 5억원) 융자 지원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LIPS II)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 지원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 지원

◆ 본 사업고도화 프로그램은 권역별 오디션 대상자(540개사)에게 제공합니다.
권역별 주관기관(8개)에 따라 사업고도화 프로그램은 차이가 있습니다.

□ 공통프로그램

- (기업진단) 경영 애로사항, 사업고도화 방향 수립 등 수요조사와 전문 툴(tool)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기업 역량진단 제공
- (교육·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IR피칭 교육,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AI 활용 역량강화 등 제공
 - 비즈니스 고도화, 투자·수출·지재권·온라인 판로, 피칭역량 강화 등 사업화를 위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 (네트워킹) 비즈니스 인사이트 교류 네트워킹, 투자사·유통사·해외 바이어 밋업, 권역 내 사업 수혜자 간의 네트워킹 등 제공
- (사업화지원) 디자인·패키징 개선, 리브랜딩, 신제품 개발 등 사업 모델 고도화 지원
- (특화프로그램) 국내·외 판로개척, 플랫폼사 e비즈니스 역량강화, 투·용자 연계를 통한 스케일업,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 제공
- (오디션) 권역별 오디션 ⇨ 전국 오디션, 2단계로 운영
 - 로컬기업 육성 사업 (권역별) 290개사 → (전국) 20개사 선정,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권역별) 250개사 → (전국) 60개사 선정

□ 로컬기업 육성

- (지역연계) 지역기업 연계 및 지역주민 참여, 방문객 유치 등 지역 경제 및 상권 활성화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 제공

□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 (팀빌딩 지원) 창작자, 스타트업, 이업종 등 외부 파트너사 연계를 통해 참여기업 간 협업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사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소상공인)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의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대표기업)가 하여야 하며, 소상공인24 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평가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표절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선정자는 동 공고문, 사업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 신청기업 역량을 반영하여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향후 사업화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
 - * 본 증권의 발급가능여부는 발급처 확인 필요
- **(로컬기업 육성)** 활용자원의 소재지와 본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본점의 소재지를 활용자원의 소재지로 변경 하여야 함
-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선정 이후 사업장 주소지 이전 등 권역 이동 시, 기 선정 권역을 기준으로 활동(교육, 오디션) 진행

9

향후일정

- **(선정발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개별확인 및 참여 소상공인에게 개별 연락
- **(성장지원)** 소상공인에게 업종·지역·매장크기 등 상점 특성, 사업 아이템, 사업화정도 등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팀빌딩)**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은 외부 파트너사 매칭 및 사업 아이템, 사업화 정도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사업화자금 협약체결)**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 진행 (5월 예정)
- **(사업화)** 신제품 개발,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유형별 특화프로그램 참여,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진행 (6월 예정)
- **(전국 오디션)** 사업화를 진행하는 기업은 전국 오디션에 참여하고,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로컬기업 육성 사업 상위 20개사,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상위 60개사 대상 후속지원(예정)
 - * 후속지원 : 글로벌 소상공인(수출), 로컬창업 R&D, 스마트제조, 위탁제조 바우처, 신시장개척자금(마일스톤 융자) 등

□ 사업문의

- (온라인) 소상공인24 -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상담 - 문의사항 등록
- (유선) 권역별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순번	주관기관명	해당권역	로컬기업 육성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1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경기, 인천	02-739-9369	02-739-7265
2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	033-248-7940	033-248-7914
3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 충남, 대전, 세종	044-999-1048	044-998-0761
4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	063-220-8912	063-220-8946
5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 광주	061-661-1938	062-364-9184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061-661-1937	062-364-9184
6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 대구	054-470-2680	054-470-2677
			054-470-2656	054-470-2625
7	(주)글리처파트너스	부산, 울산, 경남	-	070-4215-8478
	알에이치테크		055-716-1100	-
8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	064-710-1990	064-710-1972
	제주경제통상진흥원		064-805-3396	064-805-3396

- 【참고 1】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참고 2】 로컬창업 소상공인 7대 분야
- 【참고 3】 지원제외 업종
- 【참고 4】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참고 5】 서류평가 가점 증빙서류
- 【참고 6】 동시수행 제한 정부지원사업
- 【참고 7】 로컬기업 육성 사업 지원 사례
- 【참고 8】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지원 사례
- 【참고 9】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

참고1

1-1.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로컬기업 육성)

□ 사업기간 : '26. 4월 ~ 12월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추진단계	추진내용	추진일정(안)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자(소상공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 sbiz24.or.kr 	'26. 4. 1.
아이디어 선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디어 선정 : 서류평가 	'26. 4~5월
평가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지원 대상자(소상공인) 500개사 선정 ☉ 선정자 대상 성장지원 자금 3백만원 지원 	'26. 5월
성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상담 진행 * 성장지원 미참여 시, 권역별 오디션참여 및 성장지원자금·사업화자금 지원 불가 	'26. 5월~
권역별 오디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26. 6월~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 선정자 대상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 	'26. 6월~
전국 오디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추가 사업화 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26. 9월~
사후관리 (후속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자(소상공인) 대상 사후관리 * 투융자 연계, 네트워크 등 후속 지원 * 성과조사, 회계정산 등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최대 5억원 (해당시) 	'26. 9월~

참고1

1-2.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 사업기간 : '26. 4월 ~ 12월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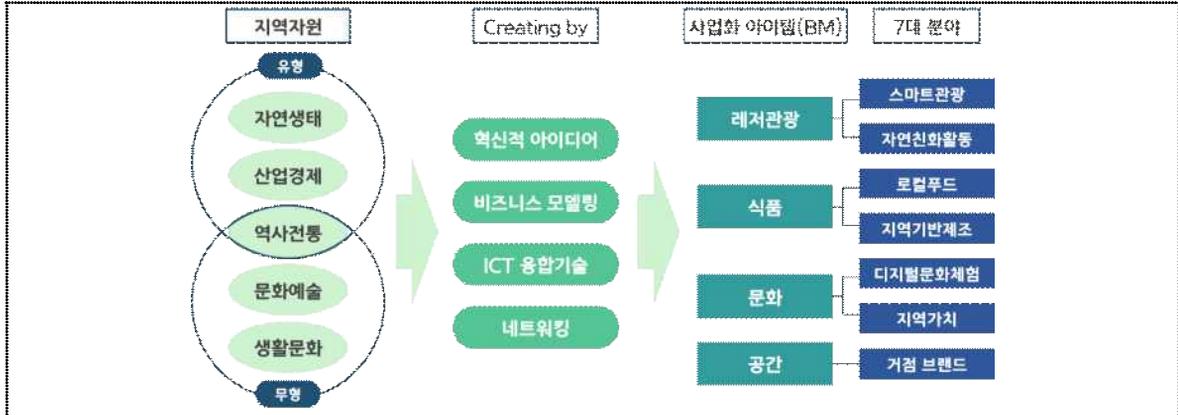
추진단계	추진내용	추진일정(안)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자(소상공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 sbiz24.or.kr 	'26. 4. 1.
↓		
아이디어 선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디어 선정: 서류평가 	'26. 4~5월
↓		
평가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팀빌딩 대상자(소상공인) 500개사 선정 ☛ 아이디어 선정자 대상 성장지원자금 3백만원 지원 	'26. 5월
↓		
팀 매칭 및 빌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파트너(창작자, 스타트업, 이업종) 매칭데이 및 컨셉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26. 5월~
↓		
권역별 오디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26. 6월~
↓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및 사업화자금 지원 ☛ 선정자 대상 사업화자금 최대 6천만원 지원 	'26. 6월~
↓		
전국 오디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추가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 	'26. 9월~
↓		
사후관리 (후속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자(소상공인) 대상 사후관리 * 투융자 연계, 네트워크 등 후속 지원 * 성과조사, 회계정산 등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최대 5억원 	'26. 9월~

< 로컬창업 소상공인 개념 >

[정의]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창업 소상공인은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로컬창업 소상공인 유형 분류표 >



[요건]

- ① 지역의 유·무형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자
- ②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통해 창업하는 자
- ③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나타난 성과를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

< 로컬창업 소상공인의 7대 분야 >

구분	내용
지역가치	·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 · (기대효과) 플랫폼과 더불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
로컬푸드	· 지역의 특산물,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 (기대효과) 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배되는 스마트팜이나,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 종자개발부터 유통·제조·판매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6차산업 발전
지역기반제조	·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 (기대효과) 수공업과 DIY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로컬제조업으로 육성
지역특화관광	· 관광자원(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기대효과) VR 등을 활용한 가상 관광, 체험 등의 관광 수요증가 예상
거점브랜드	·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 (기대효과) 쇼핑은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 오프라인 소비는 단순소비보다는 가치소비(Meaning Out)가 중요해져 지역별 거점브랜드 육성이 필요
디지털 문화체험	·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 (기대효과) AR, VR 등과 결합된 디지털 문화체험 콘텐츠 시장 확대 예상
자연친화활동	·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바다, 산, 강 등)에서 진행되는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 (기대효과) 집단적 활동(테마파크 등)보다는 가족 또는 나홀로 단위의 레저활동(캠핑, 글램핑 등)의 수요증가 예상

참고3

혁신소상공인 육성 사업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표준산업분류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③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제외)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③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에서 정한 다음 ①~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①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⑥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철회할 수 없음))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19.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업종구분 방법

□ 업종구분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 예 :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 방법>

-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 예 :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서식8>'**를 작성하여 제출

참고5

서류평가 가점 증빙서류

구분	연계사업	가점	증빙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2점	- (자격)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창업기업(1기~18기) - (증빙)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증 * (1기~18기) 소상공인24(www.sbiz24.kr)-마이페이지-증명서발급신청-등록-'기업가형소상공인확인서' 발급w
	'25년도 장인학교	2점	- (자격) '25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장인학교트랙) 수혜자 중 공고게시일 기준 이전에 창업한 자 - (증빙) 장인학교 수료증 * 공단에서 발급한 장인학교 수료증 ** 로컬기업 육성 사업만 가점 부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2점	- (자격) 개인·협업·로컬브랜드·글로벌상권 사업 수혜자 - (증빙)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확인서 * 소상공인24(www.sbiz24.kr)-'증명서발급'탭-'증명서발급신청'탭-기업가형소상공인확인서 선택-'발급신청'클릭-'증명서목록'탭에서 확인 **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만 가점 부여
	지역발전특구	1점	- (자격) 공고 전년도 우수특구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관련 기업 중, 지자체 추천절차를 거쳐 우대대상으로 확정된 자 - (증빙) 중소기업부(특구운영과) 통보 공문 * 로컬기업 육성 사업만 가점 부여
	백년가게·백년소공인	1점	- (자격) 공단에서 인정한 정식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인증업체 - (증빙) 해당 공단 담당 사업부서를 통해 별도 확인 예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1점	- (자격) '25년부터 해당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 (증빙)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발행한 확인 공문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지원	1점	- (자격) 최근 4년간 해당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22-25년) - (증빙)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발행한 확인 공문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0.5점	- (관련지역) 해당 사업에 선정된 51개 지자체('18~'25년) * '26년 신규 청년마을 선정지 10곳 포함도 가능(4월 중 최종 선정) - (자격)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한 청년단체·기업의 대표 혹은 운영진(1년 이상 활동) 중에서 행정안전부의 확인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증빙) 청년마을명, 운영기간, 운영내용 및 역할 등이 포함된 확인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0.5점	- (관련지역) 해당 사업에 선정된 38개 지자체('23~'25년) - (자격)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증빙) 로컬브랜딩 관련 사업명, 참여 기간, 참여내용 및 역할, 참여자 및 기업명 등이 포함되고 해당 지자체장 직인이 있는 추천서
행정	인구감소지역	0.5점	- (자격)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

구분	연계사업	가점	증빙자료
안전부	내 소상공인		<p>치해 있는 소상공인</p> <p>- (증빙) 별도 없음</p> <p>* 로컬기업 육성 사업만 가점 부여</p>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원사업	0.5점	<p>- (관련지역)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문화도시(1~4차, 24곳)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13곳)</p> <p>- (자격) 문화도시 및 대한민국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p> <p>- (증빙) 문화도시 관련 사업명, 참여 기간, 참여내용 및 역할, 참여자 및 기업명 등이 포함되고 해당 지자체장의 직인이 있는 문서(공문 등)</p>
국토교통부 등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0.5점	<p>- (자격)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지 내 소상공인</p> <p>- (증빙) 지역활력타운 선정 보도자료, 지역활력타운 선정지 내 입주를 증빙할 수 있는 지자체 확인서 등</p>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0.5점	<p>- (자격) 해당 사업으로 준공('19~'25년)한 시설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해 사업을 운영중인 운영주체(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업종 등 조건 필수)</p> <p>- (증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공문</p>
	농촌형 비즈니스 확산 사업	0.5점	<p>- (자격) 해당 사업에 선정된 업체</p> <p>* '26년 신규 선정 업체 포함도 가능 2월 중 최종 선정</p> <p>- (증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선정결과 안내 공문</p>
	농촌융복합산업 혁신 거점 조성 사업	0.5점	<p>- (자격) 최근 5년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받은 업체('20~'25)</p> <p>- (증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선정결과 안내 공문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p>
	농진청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0.5점	<p>- (자격) 해당 사업으로 구축('10~'24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창업보육과정을 이수한 자(개인, 법인 등)</p> <p>- (증빙)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창업보육 교육(과정명: '가공' 관련 교육 인정) 참여자(개인, 조직체 등), 교육기간(횟수) 및 이수시간등이 포함되고, 해당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인이있는 '교육이수확인서(수료증)'</p>
지재처	소상공인 IP 역량강화사업	0.5점	<p>- (자격) 지식재산센터의 'IP창출 종합패키지('22~'25년)' 수혜 기업</p> <p>- (증빙)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에서 발행한 수혜사실 확인서류(공문 등)</p>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0.5점	<p>- (자격)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혜 기업</p> <p>- (증빙)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발행한 수혜사실 확인서류(공문 등)</p>
기재부	중소기업 기술마켓	0.5점	<p>- (자격)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술·제품 등록 기업</p> <p>- (증빙)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p>

※ 가점 증빙서류 발급방법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6

동시수행 제한 정부지원사업

연번	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2	로컬기업 육성	
3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4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5	예비창업패키지	
6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팀)	
7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8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9	초기창업패키지(투자연계형)	
10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11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12	창업도약패키지(투자연계형)	
13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14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	
15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16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팁스)	
17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포스트팁스)	
18	창업중심대학	
19	재도전성공패키지	
20	제품화 ALL-In-One 팩	
21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22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23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25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6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27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28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9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30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31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32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3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34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35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36	(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37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38	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39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40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41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42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평화 창업 지원사업	



<그○○○○○○프>

- (아이템) 로컬 기반 디저트 카페와 라이프스타일 존을 결합한 F&B 샵인샵 모델
- (로컬창업 소상공인 7대분야) 지역가치
- (내용) 지역 기반 창작자 및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해 세종 특산물을 활용한 로컬 디저트 상품 개발 및 팝업 스토어 운영



<바○비>

- (아이템) 부산 기장군 천연 벌꿀을 활용한 프리미엄 디저트 및 로컬 브랜드
- (로컬창업 소상공인 7대분야) 로컬푸드
- (내용) 부산 기장군에 거점을 둔 천연 벌꿀 브랜드 '바이비'를 통해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은 벌꿀 제품 및 디저트 개발



<비○○○○다>

- (아이템) 강진 청자 식기를 활용한 다이닝 프로그램 및 '오늘의 청자' 제품 개발
- (로컬창업 소상공인 7대분야) 지역기반제조
- (내용) 지역의 역사와 전통성을 가진 청자를 오늘의 생활방식에 맞게 활용한 기프트 패키지 제작 및 다이닝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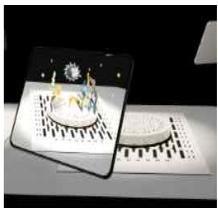
<업○운>

- (아이템) 흥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 청년 테마파크
- (로컬창업 소상공인 7대분야) 지역특화관광
- (내용) 2030 로컬 여행 소비자 타겟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셜링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농촌관광 제공



<체○○○트>

- (아이템) 체크인 강릉 - '로컬리스트'를 통한 강릉여행 오감만족 프로젝트
- (로컬창업 소상공인 7대분야) 거점브랜드
- (내용) 강릉 포남동의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거점브랜드로 활용하며, 로컬 청년 브랜드와 협업하는 플리마켓, 팝업 스토어 운영



<인○○어>

- (아이템) 제주전통종이예술 '기메' 기반 체험형 디지털 팝업 상점
- (로컬창업 소상공인 7대분야) 디지털문화체험
- (내용) 제주 전통예술 '기메'에 AR/VR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체험형 팝업상점, NFC 키링, AR 타투 등으로 실감형 콘텐츠 구형



<조○○○○○○오>

- (아이템) 자연의 시각에서 다시 보는 서울시, Seoul My Birds "서울시 탐조노트"
- (로컬창업 소상공인 7대분야) 자연친화활동
- (내용) 서울시에서 볼 수 있는 새들을 지역·시기별로 정리하고, 탐조 지도 및 띠부띠부씰로 시각화

참고8

지원 사례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 우수사례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프스타일(O아트) 민화 소장품으로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성 있는 생활용품에 민화 이미지를 접목하여 전통문화의 감성과 가치를 전달하고 5,000여점의 '한국민화뮤지엄' 소장품을 활용한 1,300여건의 제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브랜드(OO산업) 고창 땅콩에 땅콩버터 제조기술을 융합한 땅콩버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콩 농사 기계화를 통해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브랜드 런칭 후 무첨가 땅콩버터 제품을 개발·출시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협업유형(3개)

【1】 소상공인+창작자	【2】 소상공인+스타트업	【3】 소상공인+이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디자인, 브랜딩, 패키징 등의 다양한 문제 ■ (창) 해결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상품기획, 판로 등 사업 운영 애로 ■ (스) 속도·편의·효율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 서비스 융합 모델 제안 ■ (이업종) 제품·굿즈 등의 협업 내용 제시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창작자(OO이야기) 브랜드 리뉴얼 및 정체성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B 브랜드 디자인 전문가와 협업하여 복춘 로컬 브랜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상품 디자인 고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스타트업(OO산업) 기술협업을 통한 제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식품제조가공업)과 협업하여 기존 용기의 한계를 보완하고 소비자 사용성을 높인 캡슐형 땅콩버터 제품 개발 및 라인업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소상공인(OO컴퍼니) 브랜드 및 제품 비주얼 콘텐츠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 푸드 스타일링과 전문 촬영을 통한 고품질 비주얼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품 경쟁력 및 브랜드 이미지 고도화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 (콜센터) 1533-0100
-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